



# 예산총괄표

공문제출번호: C10742019000068

순번	세입				세출						
	관	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관	항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1	사업수입	사업수입	3,500,000	3,000,000	▲500,000	사무비	인건비	226,946,030	239,716,890	12,770,860	
2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65,766,030	279,876,890	14,110,860	사무비	업무추진비	1,000,000	0	▲1,000,000	
3	이월금	이월금	17,100,000	22,175,700	5,075,700	사무비	운영비	37,800,000	39,100,000	1,300,000	
4	접수입	접수입	40,000	0	▲4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1,500,000	2,000,000	500,000	
5			0	0	0	사업비	운영비	1,000,000	1,000,000	0	
6			0	0	0	잠지출	잠지출	9,300,000	19,181,700	9,881,700	
7			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8,860,000	4,054,000	▲4,806,000	
세입 합계			286,406,030	305,052,590	18,646,560	세출합계			286,406,030	305,052,590	18,646,560

(단위: 원)

## 예산총칙(광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1조(총칙)광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305,052,590원 으로 하며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예산)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경상보조금수입	: 279,816,890원
②전년도이월금(보조금)	: 2,994,000원
③전년도이월금(자부담)	: 19,181,700원
④사업수입(차량사업)	: 3,000,000원
⑤기타예금이자수입	: 60,000원

제3조(세출예산)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건비	: 239,716,890원
②사무운영비	: 39,100,000원
③사업비(연료비)	: 1,000,000원
④재산조성비	: 2,000,000원
⑤반환금	: 3,054,000원
⑥잡지출	: 19,181,700원
⑦예비비	: 1,000,000원

제4조(예산의 집행)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부득이 예산과목간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센터장)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2)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 3)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4)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 5)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6)세출예산 성립 후 추가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보조금수입은 명시 목적에 따라 우선 집행하며, 사업내용을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다.
- 7)후원금(목적후원금)특정 목적사업예산중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